

제5회 아.태농아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

참가자 선발 기준

□ 선발 기준

구 분	자 격	근 거
선수	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경기단체의 선수등록을 필한 자(2018년 기준)	내부 기준
	최근 3년이내 전국장애인(학생)체전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 대회 입상 자	
지도자	「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등록규정」 제19조(지도자등록구분)에 명시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	「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등록규정」제19조 (대한장애인체육회)
	위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 5년 이상인 자	「국가대표선발규정」 제16조 1항 3호 (대한장애인체육회)

○ 지도자 선발

- 접수된 인원이 선발인원 이하일 경우, 감독 및 코치직은 다 경험자 순으로 선정
- 접수된 인원이 선발인원 초과할 경우, 내부 심의를 통해 참가 대상자 선발

○ 선수 선발

- 접수된 인원이 선발인원 이하일 경우, 선발 기준 충족 대상 전원 참가 신청
- 접수된 인원이 선발인원 초과할 경우, 내부 심의를 통해 참가 대상자 선발

□ 결격사유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선발 될 수 없다.

1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
3.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
4.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,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
5.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성추행,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

-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,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
6.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,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7.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 수수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와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
 8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
 9. 가맹단체, 민간단체(시도장애인체육회 등)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,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10. 가맹단체, 민간단체(시도장애인체육회 등)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11.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
 12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(지도자에 한함)
 13. 가맹단체(시도지부 포함)의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,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
- * 관련근거:「국가대표선발규정」 제5조(대한장애인체육회)



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

Korea Deaf Sports Federation